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5693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공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7823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24.

판 결 선 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표준세율을 정하면서 호별로 차등과세를 하고 있을 뿐 중과세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변전소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나아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변전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제55조 [별표 2]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변전소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변전소에 관하여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2016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